

● 제295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5)  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6)**

**검 토 보 고 서**

2020. 6. 16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**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**

의안번호 1565, 1566

### **I. 조례안 개요**

#### **1. 제출자 및 제안경과**

##### **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5)**

- (1)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(2) 제 출 일 : 2020. 5. 25.
- (3) 회 부 일 : 2020. 5. 29.

##### **나.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6)**

- (1)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(2) 제 출 일 : 2020. 5. 25.
- (3) 회 부 일 : 2020. 5. 29.

#### **2. 제안이유**

##### **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5)**

-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‘스페이스 살림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**나.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6)**

-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‘스페이스 살림’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사무로 명시하고자 함.

### **3. 주요내용**

#### **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5)**

-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에 여성창업 활성화, 성평등·돌봄 환경 조성, 여성·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페이스 살림을 추가함(안 제4조).
-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으로 창업공간, 자금, 장비 등 여성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,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,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,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함(안 제5조의2).
-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, 제19조 및 별표 6의2).

**나.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6)**

-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를 신설함(안 제3조).

**4. 참고사항**

**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5)**

- (1)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
- (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(3) 기 타
  -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  - 입법예고('20. 4. 2.~4. 22.) 결과: 의견없음

**나.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6)**

- (1)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
- (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(3) 기 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- 입법예고('20. 4. 2.~4. 22.) 결과: 의견없음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검토보고의 대상이 되는 의안번호 1565번 “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과 의안번호 1566번 “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은 각각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‘스페이스 살림’의 운영 및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과 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사무로 명시하려는 것임.

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 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5)

##### □ 시립 여성관련시설로 규정 (안 제4조제1의2호, 안 제5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스페이스 살림의 명칭과 내용을 시립 여성관련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(안 제4조 1의2), 그 기능을 규정(안 제5조의2)하였음.
  - 이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1)를 근거로 스페이스 살림을 설치

1)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 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하고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조례」제29조2)에 따라 별도의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을 위한 그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<u>제 1호 내지 제5호</u>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</p>	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<u>스페이스 살림: 여성창업 활성화, 성평등·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·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그 밖에 <u>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의2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2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조례」 제29조(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.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5조의2(스페이스 살림의 기능)</u></p> <p><u>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창업공간, 자금,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</u></li> <li><u>2.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</u></li> <li><u>3. 일·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</u></li> <li><u>4.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</u></li> <li><u>5. 정보통신 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</u></li> <li><u>6. 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, 성평등·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·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</u></li> </ol>

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 규정 (안 제18조제1항제1의2, 안 제19조제2항 신설)

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<sup>3)</sup>,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이에 개정안은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 부과·징수 및 이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에게	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----- ----- -----

3) 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 4. 1.>

현행	개정안
<p>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2. ~ 4. (생략) ② (생략)</p> 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----- ----- 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스페이스 살림: 별표 6의 2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시장은 제18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창업공간은 제외한다.</u></p> <p>1. <u>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(자치구는 제외한다)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. 다만,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(생략)</p>	<p>2. 「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: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. 다만,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</p> <p>3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
- 감면 대상에서(안 제19조제2항) 창업공간을 제외하는 것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<sup>4)</sup>에 따라 창업자는 공유재산 이용료를

4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7조의2(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)

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,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.

② 동일한 입주자가 동일한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

건물평가액의 1/100로 감면받도록 하고 있는 바, 현재 스페이스 살림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면  $m^2/1$ 개월당 7,190원<sup>5)</sup>으로 개정안의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 기준(안 별표 6의2)에 따른 창업공간 이용료는 2,280~20,000원( $m^2$ 당/1개월)와 비교해 볼 때,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중복 감면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.

[안 별표 6의2]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 기준(제18조제1항 관련)

구 분		이용료 부과·징수 기준(단위)
창업공간 이용료	창업공간	2,280원~20,000원( $m^2$ 당/1개월)

1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1. 14.]

5) ○ 창업공간 재산가액 = 부지평가액 + 건물평가액

구분	부지평가액	건물평가액	창업공간 재산가액 (부지+건물)
해당년도('20년)	4,201,700	3,642,400	7,844,100

○ 창업공간 재산가액 = 부지평가액 + 건물평가액

재산가액 ①	사용요율 ②	산출사용료 ③=①*②	부가세 ④*10%	사용료 부과액
7,844,100	1%	78,441	7,844	86,285

○ 최종부과액

사용료 부과액 ①	전용면적 ②	최종부과액 ③=①/②	월할계산 (12개월)	비고
86,285	2,084	41	7,190.43	

- 한편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의 경우(안 제19조제2항제2호),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플라자의 감면 대상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는데, 이는 여성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페이스 살림과 여성의 권익향상(능력개발)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여성플라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으로, 서울시가 스페이스 살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도 여성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만 감면(안 제19조제2항제3호)하도록 하고 있음.

**나.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66)**

**□ 여성가족재단 사업 (안 제3조제9호 신설)**

- 개정안은 스페이스 살림 관리·운영 주체인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으로 “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”를 추가·신설하려는 것으로, 스페이스 살림의 2020년 9월 개관에 앞서 스페이스 살림에 대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3조 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	제3조(재단의 사업) ----- ----- -----

<p>1. ~ 8.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9. ~ 11.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1. ~ 8.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</u></p> <p>10. ~ 12. (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)</p>
--	---

**3 종합 의견**

- 동 검토보고의 대상이 되는 2건의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개관을 앞둔 스페이스 살림을 시립 여성관련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사용료 규정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과,
- 스페이스 살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스페이스 살림의 관리·운영 주체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사무에 스페이스 살림 관련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2건 모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여성가족복합시설 '스페이스 살림' 조성개요

## 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동작구 대방동 340-4번지 외 3필지
- 규 모 : 지상 7층, 지하 2층 (연면적 17,957㎡)
- 사업기간 : '15년 ~ '20년 9월 ※ 공정률 : 81%
- 주요시설 : 여성창업공간, 성평등·돌봄공간, 열린공유공간
  - 창업공간, 자금, 장비 등 지원으로 '국내 최초 여성창업통합지원'시스템 구축
  - 시간제 보육, 초등 돌봄 제공,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
- 사업기간 : 2015년~2020년 9월
- 총사업비 : 1,151억원 (토지 636억원, 공사비 462억원, 설계·감리비 등 53억원)

## □ 층별 시설내역

구분	층별 용도
3층~7층	연수시설(3~7층) 야외공연장(3층), 옥상텃밭(3층)
2층	창업자 입주공간, 마을서재(2층), 열린카페(2층), 교육장 우리동네키움센터(상담실), 식당, 몸마음돌봄공간
1층	창업매장(편집매장, 소름), 공유사무실, 우리동네키움센터, 영유아 시간제 보육시설, 마을서재(1층), 열린카페(1층) 옥외 : 야외놀이터
B1층	창업자 입주공간(매장, 사무실), 다목적홀, 주차장
B2층	창업자 입주공간(매장, 사무실), 녹음/편집촬영실, 메이커스페이스, 세미나실, 주차장 등

